2019년도 제2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10. 14.(월요일), 10:0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위원, 백대용 위원, 손승우 위원(분과위원장)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02건(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30181호)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29573호는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만으로는 음원파일이 공중의 이용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결

  안건번호 제2019-129573호는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만으로는 음원파일이 공중의 이용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복제·전송권 침해가 의심된 부분이 현재 유튜브 임베디드 링크로 교체되어 있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30180호~130181호는 합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신춘문예 당선 단편소설 전체 분량을 작가지망생 카페에서 제공한 사안으로 게시된 작품을 합법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점, 카페가 영리적인 성격 없이 순수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건으로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97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록은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음

- B 위원 :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시정권고 회의록은 공개하되 정보제공청구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3018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002건임
  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29573호는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최신 대중가요 음원을 이용한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복제·전송권 침해가 문제 된 부분은 현재 수정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어 더 이상 전송되고 있지 않음
  (보호원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9571호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과 가사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나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음원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음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안건번호 제2019-129572호는 배경음악으로 음원 파일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해당 곡 실연 가수의 사진과 가사를 함께 이용한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됨
  하지만 현재 위 블로그의 전체 게시물이 보이지 않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 주소를 입력하면 "비공개 글 입니다."는 메시지가 보임
  안건번호 제2019-129573호는 배경음악으로 음원 한 곡 전체분량을 제공하면서, 해당 곡이 수록된 앨범 표지 이미지와 가사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나 현재는 문제가 된 영상물 대신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유튜브(YouTube)'에 게시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물을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2957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만으로는 음원 파일이 공중의 이용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같은 의견임
  또한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된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C 위원 : 음원 파일의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재 게시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결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29573호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30180호~1301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0180호~130181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토대로 보호원이 조사하고 심의를 요청한 건임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호원에서 2015년, 2019년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2개의 게시물을 임의로 선정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단편소설 한 편을 카페에서 무료로 전부 게재한 것으로 이른바 '전유형(Appropriation)' 이용에 해당함

참고로 해당 카페는 다수의 신춘문예 소설, 시 당선작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카페는 문학공모전 등을 통해 등단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정보 공유와 작품 비평을 위해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 작품집 공동구매, 신춘문예공모 당선작품집 구매 게시판이 있는 등 해당 카페 및 복제·전송자에게 직, 간접적인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해당 저작물이 판매되고 있는 작품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작가 또는 여러 작가의 단편소설들을 묶어서 출판물로 판매를 하고 있음
'나나'는 '2019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 (출판:한국소설가협회)'에 수록되었고, 해당 출판물은 16,200원에 판매 중임
'1교시 언어이해'는 '2015 신춘문예 당선소설집 (출판:한국소설가협회)'과 해당 작가의 창작집 '1004번의 파르티타 (출판:문학동네)'에 수록되었고 각 출판물은 14,400원, 10,800원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편소설을 합법사이트(신춘문예를 주최한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음

- A 위원 : 신춘문예의 경우 신춘문예를 주최한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확인해 보았는데 공고 내용에는 저작재산권 귀속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저작자는 작가일 것이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작가나 출판사가 아닌 제3자임

- C 위원 : 신춘문예 당선작을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됨
  신문사의 이미지 제고나 광고 효과를 위해 게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

- A 위원 : 신문사가 작품을 통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신문사의 구독자를 늘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독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사료됨
  카페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카페를 제시하면서)카페의 정회원 이상만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음
  다만 게시판은 확인할 수 있는데 작품집 구매 게시판 등이 있음

- B 위원 : 작품의 합법적인 구매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카페 내 광고가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광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카페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순수한 의미의 동호회성 카페라고 판단됨
  신춘문예 당선작을 게시한 것이 저작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

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C 위원 : 신춘문예 당선작이 합법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카페 이용자는 그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복제물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본 사안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문제라고 사료됨
  개인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본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다면 해당 카페의 모든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사이트 폐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이러한 시정권고가 과연 저작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B 위원 :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공모전에서의 저작권은 당선자에게 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음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이 나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각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함

- A 위원 : 해당 저작물이 합법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 카페가 순수한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카페에 영리목적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설령 저작재산권 침해라 하더라도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 신춘문예 당선작이라는 점과 해당 저작물을 신문사에서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신문사의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도 해당 카페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일러스트도 함께 복제 전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 해당 카페는 예비지망생을 비롯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그 성격은 정보공유의 성격이 강하고 영리적 성격이 없으며, 게시된 작품은 신문사에서 무료 공개하고 있는 점 등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본 건은 권리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안건번호 제2019-130180호~1301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29574호~130179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만화, 출판물,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9858호는 웹하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 (2019)'으로 2019. 8. 21. 개봉한 최신 영화임
  안건번호 제2019-129883호는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2019)'으로 2019. 8. 28. 개봉한 최신 영화임
  안건번호 제2019-129899호는 2019. 9. 18. 개봉한 영화 '예스터데이 (2019)'임

안건번호 제2019-129925호는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2019)'로 2019. 9. 11. 개봉하였음
안건번호 제2019-130127호는 웹하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악)워커홀릭 (가수: 볼빨간사춘기)' 음원파일로 2019. 9. 10. 발매한 최신 앨범에 수록되어 있음
음원파일 100개를 압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29574호~1301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129571호~129573호, 제2019-130180호, 130181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29574호~130179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ㆍ전송자에 대

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2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21.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